

로스쿨 통신

거위의 꿈



이창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치열했던 지난 1년이 지나가고 겨울방학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치열하기만 하고 방학이라는 기분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전혀 공부해보지 못했던 학문을 공부하며 유급을 피하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나가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다음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기본과목들에 대한 교과서 등을 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터디에서의 토론 등을 통해 보충하며 실습과정(160시간 의무) 이수 등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함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 부른 꿈을 품고 법률전문가로서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길은 아직까지 탄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논두렁과 같이 달려가기 힘들고, 때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고 수시로

장애물이 나타나는 산길과도 같지만 멈추거나 천천히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로스쿨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 변호사의 수가 너무 많다, 변호사시험이 너무 쉬워 변호사의 자질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사법시험과 같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3년동안 법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등등의 비판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들 때도 종종 있다.

로스쿨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응원과 격려

그러한 선배들의 걱정어린 비난들이 전혀 근거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학의 체계를 정리하고 공부하기에 3년이란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단순비교해보면 기존의 사법시험에 비해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장벽도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가 변호사로서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부터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6개월간

의 의무연수기간 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가다듬어야 하고, 그 이후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탐구능력과 실무기초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로스쿨 3년의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학사관리 엄정화를 통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변호사시험이 과락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3년의 시간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채찍질임에 분명하다.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를 고민하고 반성해본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하면서도 주말 약속은 꼭 챙기지 않았었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로스쿨은 올해 처음 졸업자를 배출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렀다. 아직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1회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지금껏 실무실습 등을 통해 보여주었던 가능성과 성실성이라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하여 서민의 법조계 진출 가능성 차단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로스쿨제도 도입시 특별전형을 도입하여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었음을 생각해본다면 특별전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반드시 사법시험의 존치만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새로 도입된 제도의 개선·발전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원래 제도로의 회귀를 주장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력도 없이 무턱대고 자격을 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한 점에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걱정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밤을 새며 꿈을 향해 달리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 우리들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선배 법조인들의 응원과 격려, 조언이야말로 꿈을 펼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디딤돌이 될테니 말이다.

ecm@gmail.com

추정의 승낙과 사문서위조죄에서 승낙의 효력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판례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판결요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추정적 승낙이란 명시적·묵시적 승낙 등 현실적 승낙이 존재하지 않지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적 승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반대의사가 없고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승낙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승낙이 추정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A의 현실적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

총평 남을 위해서 뭐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 할 일이나 잘 하면 된다.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다니면 내 소는 누가 먹이나?
관련문제 : 발이 두 개인 소는? 이발소